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835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8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나6115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AA화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A 담당변호사 임BA 외 1인)

【피고,상고인】 CA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7. 선고 2002나6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당사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3자로 하여금 그 계약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이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과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요약자(要約者)가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대상 주식회사(이하 '대상'이라 한다)와 소외 D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DA산업개발'이라 한다)가 1998. 12. 31. 대상이 서울 ○○구 ○○○○동 00-0의 14 외 10필지 지상에 건립하는 방학동 대상타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1,736,661,000원, 공사기간은 2001. 10. 29.까지, 선납금은 125억 3천만 원(통상의 도급계약과는 달리 선납금의 이자만 매회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원금은 완공 후 공사 잔대금 지급시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기성금은 실제 착공한 날부터 매 3월이 지난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DA산업개발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각종 건설공사의 수급 과정에서 상호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DA산업개발이 대상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보증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위 도급계약과 관련된 DA산업개발의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체 등에 대한 DA산업개발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그에 포함시킨 사실(도급계약서 제6조 제4항 제6호), 이러한 내용은 본래 위 도급계약서의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DA산업개발과 대상의 계약 실무담당자들이 양측에서 마련해온 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최종계약서에 포함될 개별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의 요구에 따라 이를 계약 내용에 추가로 편입한 사실, 피고는 DA산업개발이 대상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는 물론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이행의무(시공책임)까지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 DA산업개발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선납금을 모두 지급받고 1999. 1. 8. 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00. 2. 25.경 DA산업개발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1,771,541,6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01. 10. 30.경까지 하도급받은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674,357,15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 사실에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연대보증약정은 대상에 대하여 DA산업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은 물론 DA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및 자재공급업체를 수익자로 하여 DA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 및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그가 연대보증한 위 창호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674,357,153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위에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연대보증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